심 문 회 의 연 기 신 청 서

사 건		
신청인	성 명	
	주 소	(☎:)
	당사자 지위	[ ] 근로자 [ ] 노동조합 [ ] 사용자 (해당란에 √표시)
연기 사유 (해당란에 √표시)		[ ] 근로자가 노동조합선거 출마자로서 선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[ ] 사용자의 주주총회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[ ] 당해 구제신청사건과 같은 원인에 따른 소송의 재판기일이 심문회의 당일인 경우 [ ] 당사자나 대리인이 수행하는 심판사건의 심문회의가 같은 날 다른 노동위원회에서 개최 예정인 경우 [ ] 당사자나 대리인이 해외출장 중인 경우 [ ] 중대한 신병치료 중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상해, 급성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[ ]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라 체포 · 구속된 경우 [ ]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 · 비속과 형제자매의 사망으로 장례 기간 중인 경우 [ ] 당사자가 합의하여 심문회의의 연기를 신청한 경우 [ ]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(상세히 기재)

「노동위원회규칙」 제5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문회의 연기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날인)

(대리인) (서명 또인 날인)

○○(지방)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

구비서류	연기사유에 대한 소명 자료

210mm×297mm(백상지 80g/㎡)